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29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1129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안 제36조의2 등)	3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29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27.
3. 회 부 일 : 2025. 6.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퀴 탈거 등 분해점검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상태를 확인하는 정기 점검 제도는 2012년 12월 18일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화물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정비 불량으로 밝혀졌으나 현행 정기검사(분해과정 없이 각종 부품의 체결상태의 이상유무를 육안이나 장비를 통해 검사하는 방식)제도 하에서는 차량 내부 정비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

하여 재도입하고,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퀴이탈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안 제36조의2 등)

개정안은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6조의2(자동차의 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중량 이상의 특수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또는 차량중량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② 제1항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해당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현행	개정안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에는 해당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 ----- ----- ----- -----, -----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③ ----- 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 ----- 점검·검사----- ----- ----- -----.

현행	개정안
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생략)	----- -----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43조제1항1)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의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 시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로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는 차량별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함.

한편, 자동차 정기점검 제도는 자동차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구조장치 및 부품을 분해하여 점검하고 결함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용 승용·승합·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3년 정기검사와의 검사항목 중복, 소유자의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자동차 정기검사로 통합·폐지되었음.³⁾

< 정기검사와 정기점검('13.12월 폐지) 비교 >

구분	정기검사	정기점검('13.12월 폐지)
대상	○ 모든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최초 검사	○ 자가용 승용차 : 5년 ○ 사업용 승용차 : 2년 ○ 승합·화물·특수차 : 차종·용도에 따라 2년, 1년	○ 승용차 : 4년 ○ 승합차 : 5년 ○ 화물·특수차 : 6년
주기	○ 차종·용도에 따라 2년, 1년, 6개월	○ 1년
검사 방법	○ 육안 및 기계·기구로 상태 확인	○ 바퀴 탈거 등 분해를 수반한 내부 상태 점검
검사 기관	○ 교통안전공단 및 민간정비업체	○ 민간정비업체
검사 항목	○ 24개 구조·장치* 및 안전기준 일체, 보험가입여부, 불법명의·구조변경 등의 위법사항 등 * 동일성, 제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등	○ 8개* 항목 94개 세부점검 - 대형화물자동차는 8개 항목 중 원동기, 제동장치, 주행장치 등 3가지에 한함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주행장치, 전기장치, 기타

자료 : 국토교통부

3) 드림과 라이닝의 간격 및 마모상태 확인 등 일부 점검 항목은 검사기준에 반영되었음.

그런데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⁴⁾함에 따라 대형 화물차에 대한 차량 점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경우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점검을 명령하며, 미이행시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을 재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일본에서도 탈거 방식 등을 수반한 정기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8톤 이상의 자동차나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우선, 정기점검 제도는 2013년에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4) 손성배, “‘2명 사망’ 버스 덮친 트럭 바퀴…200kg 가변축 타이어였다”, 중앙일보, 2024년 2월 27일자

5) 자료 :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로 통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범위의 점검 항목, 점검 주기 등의 사항을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서는 사업용 차량 정기점검제도의 재도입시 시간적·재정적 부담⁶⁾ 가중으로 인한 화물운전자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화물차 장치 결함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행장치(가변축)’에 한정하여 정기점검을 수검하도록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개정안은 정기점검의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중 일정 중량 이상의 특수자동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 운행 중인 차량 중 대여용(렌트카)으로 사용하는 캠핑용자동차⁷⁾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대여용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유사 사고사례를

6) 정비연합회 의견은 차량당 점검비용 약 7만원 예상(자료 : 국토교통부)

7)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로 구분된 캠핑카이며, 승용·승합으로 구분된 캠핑카는 제외되고, 중형은 3.5톤 이상 10톤 미만, 대형은 10톤 이상이 해당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찾기 어렵고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정해져 있어⁸⁾ 일정 차령이 경과한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다음으로, 개정안 제3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점검결과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 보이는 바, 과태료 또는 재점검 조치 등의 수단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⁹⁾

아울러, 개정안은 정기점검결과의 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정기점검 결과의 활용 등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9) 국토교통부는 정기점검 시 바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정안 통과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정기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를 마친 차량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의 이행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를 6개월~1년마다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점검 이후 바로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동차가 다음 정기검사 수검일까지는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및 정기점검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나.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현행 정기검사(6개월~1년)는 분해과정 없이 각종 부품의 이상 유무를 육안·장비 검사 위주로 운영하여 차량 내부 상태는 확인이 불가함.

사업용 대형 화물차·특수차의 주요장치 정기점검 의무화를 통해 정비 불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특수자동차는 대여용(렌트카)으로 사용하는 캠핑카가 해당되는데, 운행연한(차령)이 9년으로 정해져 있어 일정 차령이 경과한 경우 사용이 제한됨.

대여용 캠핑카로 인해 발생한 대형 화물차 바퀴 이탈과 같은 유사한 사고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대여용과 자가용 캠핑카의 차량·운행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물차에 비하여 위험도가 낮고 일정 차령이 경과한 경우 사용이

10) 자동차검사 기록관리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한되는데도 대여용 캠핑카에만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함.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업용 대형화물차(5톤 이상)는 차령 2년 초과시 매 6개월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수검받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정기점검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연간 총 3회의 검사 및 점검을 중복으로 수검받아야 하므로 시간적·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됨.

과거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제도를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없이 정기점검제도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일괄 위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업계 부담이 막대하므로, 화물차 장치 결함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행장치(가변축)’에 한정하여 정기점검을 수검하도록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대형 화물차의 정비가 가능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업체 중(4,472개소, 국토교통통계누리) 중 정기점검(장치 분해·점검)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업체도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점검에 따른 수익성도 높지 않아 정비업체들이 정기점검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어 업계내 큰 혼란이 우려됨.

3) 전국개인중대형화물운송사업연합회

자동차의 바퀴이탈은 근본적으로 자동차 제작에 관한 사항이므로 바퀴이탈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4)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폐지('13.12.19)와 이후 발생하고 있는 부실점검 사고들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개정안은 대형화물자동차의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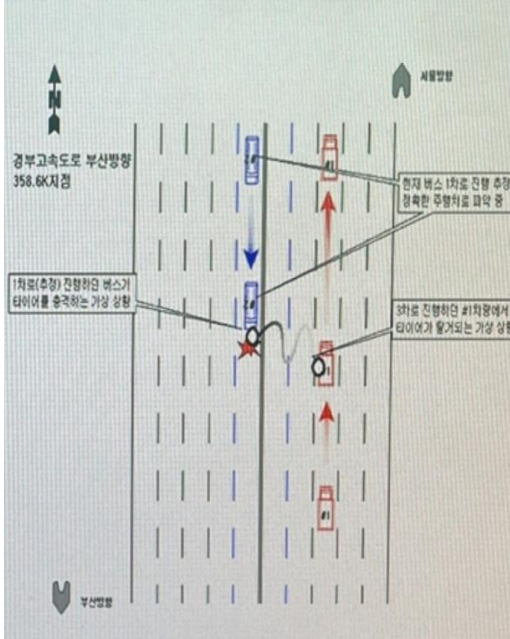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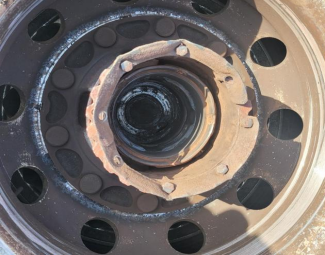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에 등록 가능한 특수자동차는 경형·소형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한정되며, 이는 대형화물자동차와 크기, 중량, 운행 특성이 현저히 다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정 중량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캠핑용 특수자동차까지 포함될 경우, 입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 1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개요

일 시	'24.2.25(일) 16:09경
장 소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359km 지점(안성 IC 부근)
사고경위	화물 트레일러 차량이 편도 5차로 중 3차로 주행 중 트레일러 중간 축 타이어가 빠져 굴러가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부산)으로 진행하던 전세버스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간 사고
피해사항	사망 2명, 중상 2명 - #1(화물) 운전자: 67세, 남 - #2(전세버스) 운전자: 61세, 남 / 사망 동승자(승객): 사망(60세, 남), 중상(82세, 남), 중상(74세, 여) - 광주광역시 사진작가협회 소속으로 총회 참석 후 귀가 중 발생 (승객 총 37명)
사고원인	- 복륵타이어(후좌측, 가변축)의 빠짐 상태 확인 결과, 열 손상으로 인한 베어링 파손 및 액슬축 굽힘 확인 - 복륵타이어 허브 내부에는 베어링 하우징 완전 손상으로 베어링 잔여 부품 無 - 볼보트럭코리아 기술지원팀 의견으로는 베어링 불량으로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복륵타이어가 이탈된 것으로 추정
현장 재구성  관련사진  허브 내부 손상 상태  허브 내부 열손상 흔적  액슬축 손상 상태  액슬축 굽힘 상태	

참고 2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 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비고

1.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2.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7.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된 상태에서 위 표의 적용 차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의 대상이 된 후 두 번째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참고 3

정기점검 해외 사례(일본만 시행)

- (개요) 자동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화와 마모가 되는 부품이 많아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법령으로 점검과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사용자의 점검 및 정비 의무), 제47조의2(일상점검 정비), 제48조(정기점검정비) 및 제58조(자동차 검사 및 자동차검사증)

- (정기점검·정비 주요내용) 자동차 종류 및 용도 등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를 점검해야 함
 - (3개월) 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8톤 이상의 자동차나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
 - (6개월) 「도로운송법」 제78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상여객운송용, 허가를 받아 업으로 유상 대여하는 자동차 등
 - (1년) 기타 자동차

< 정기점검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안내 中(국토교통성 홈페이지) >

1. 녹 및 먼지 청소 및 기름칠

바퀴에 심각한 녹이 슬고 부드럽게 회전하지 않는 볼트와 너트가 있는 바퀴를 교체하십시오.

엔진오일などの塗布部位

JIS方式(球面座)

ISO方式/新・ISO方式(平面座)

※注意!!
ホイールとの当たり面には、塗布しない

ISO方式/新・ISO方式(平面座)
ハブのはめ合い部(インロー部)

ホイール唇付面、合わせ面には塗布しない

2. 믿을 수 있는 바짝 죄기

체결 방법에는 구형 시트로 조이는 JIS 방식과 플랫 시트로 체결하는 ISO 방식의 2 종류가 있습니다. 지정된 조임 토크로 안정적으로 조입니다.

規定の締付トルク

勢いをつけないよう、ゆっくり徐々に締付けます。

締付け順序

8本ボルトの場合

10本ボルトの場合

참고 4

사업용 화물차·특수차 등록 현황 등

□ 사업용 화물차·특수차 등록현황

(‘24.11월말 기준)

규모*	경형	소형 (총중량 3.5톤이하)	중형 (총중량 3.5톤~10톤)	대형 (총중량 10톤 이상)	합계
화물차	7,295	175,871	71,630	213,971	468,767
특수차	2	13,530	13,665	41,008	68,205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자동차 종류에 따름

※ 대여용 캠핑카의 경우에는 승용, 승합, 특수차 등 차종 세부기준에서 캠핑카를 별도 구분하는 사항은 없어 자동차 등록시 대여용 캠핑카를 구분하여 등록하지 않음

□ 가변축 부착 사업용 화물차·특수차(5톤 이상) 차령별 등록현황

(‘24.11월말 기준)

차령	8년이상	7년	6년	5년	합계
화물차	78,166	7,504	6,044	6,273	97,987
특수차	17,344	1,651	1,685	1,941	22,621